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원격영상회의 제도입 및 경호·경비체계 개편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60호)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9호)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11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안)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안)	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안)	6
II . 검토의견	7
1. 국회 원격영상회의 재도입(박해철 · 복기왕 · 임오경의원안)	7
2. 국회 경비체계 개편(박해철 · 복기왕 · 임오경의원안)	17
3. 회의장 출입 방해죄 신설(복기왕의원안)	32
※ 참고자료	35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박해철 · 송옥주 · 박홍배 · 이광희 · 추미애 · 장경태
한민수 · 서영석 · 복기왕 · 이용우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3.
 - 3) 회 부 일 : 2024. 12. 16.
- ※ 의안번호 : 646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복기왕 · 윤종균 · 용혜인 · 한민수 · 김종민 · 서영교
임미애 · 박은정 · 이연희 · 정준호 · 채현일 · 박해철의원(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26.
 - 3) 회 부 일 : 2024. 12. 27.
- ※ 의안번호 : 6979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자는 의원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은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하였음. 그러나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의 담을 넘어 출입하거나 일부 의원은 결국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는 신속한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로써, 현행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개의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하고,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에 더하여 전시·사변·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삭제, 제73조의3 신설).

나. 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회기와 상관없이 국회 안에서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다. 국회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장은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 및 근무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행정기관의 명령이 아닌 국회의장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3항·제4항 신설).

라.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계 수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안 제148조의4 신설, 제155조제11호 삭제).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임오경 · 김현정 · 한민수 · 임미애 · 김재원 · 서영교
장철민 · 조계원 · 박수현 · 한정애 · 이기현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30.
 - 3) 회 부 일 : 2024. 12. 31.
- ※ 의안번호 : 71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국회 원격영상회의 제도입

가. 국회 원격영상회의 의의 및 연혁

원격영상회의는 국회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함.¹⁾

지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규모 감염 가능성의 우려로 인해 국회의 회의 소집이 제약되었으나, 「국회법」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이에 국회는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 12. 22.)을 통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음.²⁾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2021년 12월 재차 국회법을 개정하여 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6개월) 연장하였으나³⁾, 추가적인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원격영상회의 규정은 존재하되 그 효력은 상실된 상황임.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357

2) 「국회법(2020. 12. 22. 법률 제177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부칙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법률 제18666호 「국회법」 개정문 중 발췌>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12월 4일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의되었고, 같은 날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제6197호)」이 상정되어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계엄군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못하였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음.

이에 각 개정안은 계엄 등으로 인한 국회 봉쇄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안전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시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후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원격영상회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과 체계이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건과 절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종전	개정안(3건)
법적근거	<u>제73조의24)</u>	<u>안 제73조의2(박해철의원안)</u> <u>안 제73조의3 신설(복기왕, 임오경의원안)</u>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	<u>제1급감염병 확산</u> 또는 <u>천재지변</u> 등	- <u>제1급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전시·사변·계엄</u> 또는 <u>이에 준하는 상황</u> 등 (박해철의원안) - <u>제1급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전시·사변·계엄</u>

구분	종전	개정안(3건)
		또는 <u>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u> 등 (복기왕의원안) - <u>제1급감염병 확산</u> 또는 <u>천재지변</u> 등 (임오경의원안)
	<u>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u> 또는 <u>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u>	
	<u>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필요</u>	<u>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협의 필요</u> ※ 합의: 임오경의원안 협의: 박해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의사일정 작성·변경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작성·변경</u>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협의를 거쳐 작성·변경</u> ※ 합의: 박해철의원안, 임오경의원안 협의: 복기왕의원안
출석의 효력	원격영상회의 출석 시 <u>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u>	
표결 거부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 가능</u>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u> 또는 <u>제한없이</u> 표결 가능 ※ 합의: 박해철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미제한: 복기왕의원안
표결 방법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에 따라 표결. 단, <u>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수표결 가능</u>	
관련 시스템	국회의 <u>원격영상회의시스템 운영</u>	
기타 사항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 위임</u>	
◦ 시행일: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박해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임오경의원안)		

- 4) 「국회법」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법률 제17756호(2020. 12. 22.)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다. 주요 검토사항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를 요구하면서, 그 예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음.

각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예시규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이번 비상계엄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국회 외부의 세력이나 단체가 국회를 점거하거나 봉쇄하는 경우, ②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국회 건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및 ③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험 감염병이 창궐·확산함으로써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본회의 개회는 가능하되 다수의 의원이 격리되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예시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예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과도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시규정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① 임시회 집회공고 단축, ② 본회의 산회 후 재개의, ③ 안전의 심사기간 지정의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표-2] 「국회법」상 국회 의사절차 예외규정

구 분	내 용	요 건
임시회 (§5②)	• 임시회 집회기일 1일전 공고	•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산회 (§74②)	• 본회의 산회 후 재개의	•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심사기간 (§85①)	• 국회의장의 안전 심사기간 지정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둘째, 원격영상회의 개의, 의사일정 작성·변경 및 표결 등과 관련한 추가적 요건과 관련하여, 각 개정안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원칙적 협의를 거치되 표결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5)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제74조(산회)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전 또는 회부된 안전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

[표-3]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협의 관련 개정안 분류

구 분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 작성/변경	표결
북기왕의원안	협의	협의	불필요
박해철의원안		합의	합의
임오경의원안	합의		

‘합의’는 협상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모두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협의’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

코로나19와 같은 1급감염병 확산 등 본회의 개의 자체는 제약이 없으나 단순히 본회의장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12. 3. 비상계엄과 같이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 가부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요구될 경우에는 그 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해 본회의의 신속한 개의 및 의결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및 의사일정 변경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회 운영의 주요사항은 ‘협의’하는 것을 원칙⁶⁾으로 하고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미적용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음.

6) 1998. 6. 13. 「국회법」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원칙임.

[표-4] ‘협의’와 ‘합의’의 개념 및 「국회법」상 용례 비교⁷⁾

구 분	협 의	합 의
개 념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 등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국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를 의미	협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
성 격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	협의와 달리 합의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함
용 례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 일정 작성, 회의 비공개, 의사 일정 변경 등) -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 -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회기전체 의사일정 작성)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위원회 의사일정, 개회일시) - 소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연석회의 개최) - 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심사기간 지정요건, 안전의 신속처리 미적용, 예산안 등 자동부의 미적용,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가실시 등)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의안 등 자동상정 미적용,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 90일 이내 별도지정 등)

셋째,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박해철의원안 및 복기왕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임오경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시행일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과 연계되어 있는데,

7) 국회사무처,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2018. 7. 참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구축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국회사무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구축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은 국회의장단 등 회의 주재자와 50명 미만으로 구성된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그 밖에 의원은 원격으로 접속함으로써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제2회의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마련되어 있음.⁸⁾

위 시스템은 국회 봉쇄 등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본회의 개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회의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거나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보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구축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 12. 3. 비상계엄과 같이 국회가 봉쇄됨으로써 물리적으로 국회 내 본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국회규칙 제정에 필요한 기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8) 종전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p.35 [참고: 종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성 및 운영] 참조

넷째, 개정안에 따라 국회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에 구축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추가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재구축 또는 전면 개편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방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⁹⁾ 의원 출석 및 표결 방식¹⁰⁾ 등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된 후 이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법제기술적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후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인 현행법 제73조의2를 삭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 또는 규정은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실효되나, 이를 삭제하는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수범자인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효력 없이 형식만 남아 있는 현행법 제73조의2에 대한 삭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¹¹⁾

9)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4. 12, 참조.

10) 참고로, 종전 시스템은 전자표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이의유무 의결, 거수표결, 호명표결, 기립 표결 등만 가능하였음(국회사무처, 「원격영상회의 운영 매뉴얼」, p.42)

1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36

여섯째, 우리 위원회에는 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1급감염병 확산 또는 전시·사변·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9건¹²⁾이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병합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의 대표발의의원 및 의안번호는 아래와 같음.

①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제6208호), ②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제6268호), ③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제6290호), ④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제6308호), ⑤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제6383호), ⑥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제6417호), ⑦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제6585호), ⑧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제7279호), ⑨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제7316호)

2. 국회 경비체계 개편(박해철·복기왕·임오경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박해철의원안 및 임오경의원안은 국회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도록 하고, 복기왕의원안은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장이 파견 경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5]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현 행	박해철·임오경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위해 경위를 두고, 경찰공무원 파견받을 수 있음	<u>국회경비대 설치</u> - (박해철의원안) 국회경비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가능 - (임오경의원안) 국회경비대 파견 경찰공무원의 의장 지휘·감독권 명시	<u>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u> - 국회의장이 파견 경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 지명 가능. 필요 시 파견근무 기간 종료·연장 가능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박해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임오경의원안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u>회기 중 국회의</u>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 <u>국회</u> ----- ----- -----	

현행	박해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임오경의원안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 ---.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견 근무의 기간을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기 및 폐회 중에 국회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현	행	박해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임오경의원안
		<u>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둔다.</u> <u>1. 의장이 행사한 경비권의 집행</u> <u>2. 그 밖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u> <u>② 국회경비대는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한다.</u> <u>③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직무범위 및 직무장소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에 국회경비대를 둔다.</u> <u>② 의장은 국회 경비대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u>④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현행 국회 경비체계

1) 법적 근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경찰권(內部警察權)¹³⁾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¹⁴⁾을 보유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의 형식으로 발현됨.¹⁵⁾ 다만, 제정안의 발의 목적과 관련된 것은 국회의 경호·경비 제도이므로, 아래에서는 경호권과 의원가택권을 중심으로 설명함.

먼저,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 및 제144조¹⁶⁾에 근거하여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경호기획관실 소속 일반직 국회공무원)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함.

한편,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가택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 달리 폐회 중에도 항상 행사할 수 있음. 경호권과 달리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원

13)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등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

14)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1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16)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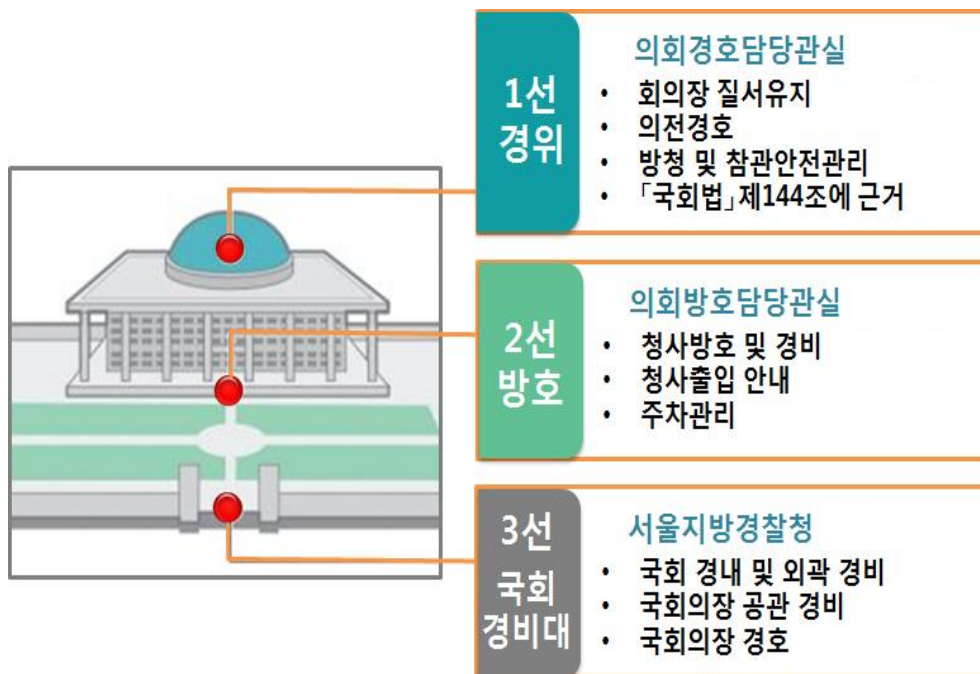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가택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경찰공무원의 과견을 요청할 수 있음.¹⁷⁾

2) 현행 국회 경비체계¹⁸⁾

현재 국회 경비체계는 3선으로 운영됨. 1선인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가, 2선인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청사출입 안내, 주차관리 업무는 국회 방호가, 3선인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 출입문 경비, 국회의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서울특별시경찰청)가 수행함.

[그림-1] 현행 국회 경비체계



자료: 국회사무처

1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18)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이상훈,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 NARS 간담회 발제문, 2024.,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국회 경위와 방호는 「국회법」 19) 및 「국회사무처 직제」 20) 등에 근거한 조직으로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직 국회공무원(경위직·방호직)과 공무원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에 근거한 경찰공무원 조직으로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배치되고 있고, 22)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으나 주요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여 수행 중임. 참고로, 1951. 3. 22. 최초로 국회경비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장 산하에서 운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5. 2. 기준 국회경비대 현원은 123명임.

19)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20)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22) 일각에서 국회경비대를 국회 경비를 위해 “파견”된 경찰력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국회 배치는 「국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상 파견이 아닌 「행정절차법」 상 행정응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표-7] 국회 경호 관련 조직 현황

(2025. 2. 1. 기준)

구분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
조직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대장(총경) 1명, 행정과, 경비제대(4개), 의장경호대
인원	경위직 69명	방호직 124명 공무직 40명	123명
주요 업무	-경호·방호 기본계획 수립 -본회의·위원회 경호 -외곽경비업무 협의·조정 -테러 예방·대응 등	-국회 청사 <u>시설의 방호 및 경비</u> -국회의사당 <u>경내 질서유지</u> -주차 관리 등	-국회 <u>경내 및 외곽 경비</u> -국회의장 경호 및 공관 경비

자료: 국회사무처

현행 국회 경비체계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권자가 나뉘어, 경호·경비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²³⁾ 및 경호 체계통일성²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기습적인 시위나 질서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신속성·긴급성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빠른 결단과 일사분란한 명령하달, 경호·경비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⁵⁾

23) 성공적인 경호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 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됨.

24)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기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뜻함.

25)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다. 해외 의회의 경비 체계²⁶⁾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의회경찰(U. S. Capitol Police: USCP)이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특별구역 경찰로서 연방 의회가 직접 선발하며, 수행 업무는 연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안전, 연방 의회 지도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국가원수·고위급 인사의 경호임. 현재 의회경찰은 약 2,000명 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밖에 운영 및 행정직을 맡고 있는 350명의 일반인이 의회경찰대에 소속되어 있음. 의회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독일 연방의회는 사무처 산하 보안부서에 의회경찰(Bundespolizei)을 두고 있고, 의회경찰은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의 파견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 연방경찰의 협조 하에 자체적으로 일부 보안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일반 경찰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서만 체포·수사를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169명(사설 보안담당관 제외) 규모임.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사무처 산하조직인 보안안전실(Reception, Security and Safety Division), 공화국 수비대²⁷⁾ 의회 파견대, 소방 파견대, 경찰 등 복수의 조직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회 파견대 지휘관은 의장에게 보고의무가 있음.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

26)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27) 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산하 조직으로,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엘리제궁)과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의 경호경비를 담당함.

아 의회방문객의 범죄이력 조회, 의사업무 방해 행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는 파리경찰국(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Security Department: PSD)을 창설하였고,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음. 한편, 의회 외곽은 특별임무 협약을 맺고 있는 특수경찰부대인 의회 및 외교 보호사령부(Parliamentary & Diplomatic Protection Command: PaDP)에서 담당하며, 현재 약 500인의 경호직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경찰 인력은 의회경호국장의 지휘를 받음.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경위가 의회 내부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경찰관(동경 경시청 기동대 담당)은 의회 외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의사당 내부의 경찰을 담당할 수도 있음. 경위가 소속된 경무부는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처 아래 조직되어 국회 경호업무(원내 경비, 정부 요인 및 외국 국민 경호)를 수행하며, 경무부장은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음.

마지막으로, 캐나다 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Protective Service: PPS)을 창설하여, 의원·의회직원·방문객 보호, 의회 건물과 경내 경비, 의회 출입통제, 외곽경비, 경내 긴급상황 대처 및 의회 기념행사의 안전한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소속이나, 양원 의장의 지휘를 받음.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의회 경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으나, 국가별로 경호·경비체계의 구성, 외곽경비 업무의 자체 수행여부, 인력 충원 방식 및 업무수행절차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

현행법²⁸⁾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건의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파견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복기왕의원안)하거나 국회경비대를 설치(박해철·임오경의원안)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12. 3. 비상계엄 당시 노출된 국회 경비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²⁹⁾은 계엄 해제요구권을 보유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회를 폐쇄하여 국회의원 및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28)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9)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군의 출입은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였음. 그 원인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이들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³⁰⁾

상기의 발의 배경을 고려할 때, 3건의 개정안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회 경비에 관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 총괄적 검토 필요 사항

국회의 독자적인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현행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관리권 보유, ②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③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 ④ 청원 경찰 활용, ⑤ 특수경비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박해철·임오경의원안은 ③에 속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입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나 조직법적 근거 마련 외에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³¹⁾ 등 기관 설립에 따른 상당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어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30)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폐쇄 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순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나 봉쇄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31)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박해철·임오경의원안과 관련하여 국회경비대 신설 시 5년간(2026~2030년) 인건비(118명 중원 가정), 기관부담금 및 기본경비로 359억 6,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복기왕의원안은 ①에 속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최소한의 변화를 도모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 유지됨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표-8] 독자적인 국회 경호·경비체계 구축방안 비교

구 분	장점	단점
경찰에 대한 지휘권 확보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립 가능	경찰청 소속 유지로 인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재발 우려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가능	일반직 국가공무원 특성상 물리력 행사를 위한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보완에 한계 존재
경호·경비 조직 신설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국회경호의 독립성 확보 가능	·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필요 · 기관 설립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단시간 내 실현 어려움
청원경찰 활용	별도의 입법 불필요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능)	·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운영 등에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많은 국가시설에서 청원경찰을 방호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음
특수경비원 활용	· 별도의 입법 불필요 (「경비업법」에 따라 가능) · 경비절감 가능	· 특수경비원 교육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경찰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 · 특수경비원의 신분제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및 높은 이직율로 전문성 저하 우려

자료: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를 참고하여 작성

참고로, 국회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수의 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³²⁾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2) 2025년 2월 11일 기준 동 개정안 외에 3건의 제정안(「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위처법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과 24건의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된 상황이며, 이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 ②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등 국회경호조직 근거 마련, ③ 파견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근거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한편,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 경호·경비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은 미국과 같이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경찰을 선발·구성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국회의장 경호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관 파견의 경우 여전히 인사·예산권 등을 경찰청에서 보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3) 의안별 검토 필요 사항

우선, 박해철·임오경의원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양 개정안은 국회경비대에 사법경찰권 부여, 경찰공무원 파견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위험발생 방지, 범죄예방 및 제지, 무기 사용 등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유형력³³⁾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경비대를 설립할 경우 경위(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국회법」 제144조³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고 있지

3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등

34)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앞으로 국회 경비 업무를 국회경비대와 경위로 비롯되는 경호기획관실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조직의 구성 및 업무협조 체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복기왕의원안과 관련하여 안 제144조제5항에서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 파견 시 간부급 인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파견 근무의 기간을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파견의 발령은 일반적으로 파견기관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³⁵⁾ 개정안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의 원칙 및 파견기관(경찰청)의 인사권·자율성을 저해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35)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 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3. 회의장 출입 방해죄 신설(복기왕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복기왕의원안은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징계에서 형사처벌로 변경하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복기왕의원안
<신 설>	제148조의4(회의장 출입의 방해죄)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삭 제>

현행	복기왕의원안
<u>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u>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³⁶⁾은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의원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원의 징계 사유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폭력행위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형량은 기존의 국회 회의 방해죄와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였음.

36)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의원의 회의 출석 방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의원·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사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국회의 자율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15, 5016

1 원격영상회의 회의장 구성

Ⅰ 회의장소 : 제2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설비가 既 구축되어 있어 추가 예산소요가 적고, 본회의장(제1회의장)과 가장 유사한 구조인 점 등 고려

Ⅱ 회의장 디스플레이 구성

- 의장석 전면 : 디스플레이 10대 운용

- 의석 뒤편 : 총 6대 설치(중앙 75인치 2대, 좌우 측면 55인치 4대)
- 의석 앞편(의석 첫 줄과 속기사석 사이) : 총 4대 설치(55인치 4대)
- ※ 의석 앞편의 디스플레이는 통로 입구에 배치하여 의장님과 회의장 참석의원 간 시야 확보
- ※ 예결위 활동을 감안하여 이동식 디스플레이 설치

- 영상회의 출석의원 최대 250명 동시 표출(대당 25명) ※ 회의장 출석의원 : 50명 이내
- ※ 영국의 경우 일부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의장 내 좌우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운용(상원: 10대, 하원: 8대)



- 회의장 참석의원 전면 : 의장석 좌우 전광판 2대 활용

- 원격영상회의 참석 화면(25분할) 또는 표결안건 목록 화면을 표시하되 필요시 국회방송 화면도 송출



37) 국회사무처, 「원격영상회의 운영 매뉴얼」, 2021. 3, pp.7-9

I 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 회의장 출석의원 : 50명 이내(영상회의 출석의원 : 250명) ※ 거리두기 실시
 - 영국 하원 사례 및 제2회의장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의장에 50명 이내 출석
 - ※ 영국 하원의 경우(20. 4. 21. ~ 5. 20.), 전체 하원의원 650명 중 50명으로 회의장 참석 제한
 - ※ 단,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되는 경우, 교섭단체 간 출석인원 하향 조정 협의(회의장 출석 인원이 하향 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용 디스플레이 2대 확보)
 - 회의장 출석 대상
 - 원활한 협의 및 회의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및 발언이 예정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 교섭단체별 인원 배정 방안 및 참석의원은 교섭단체간 협의 진행
 - 의석 배정 : 현재 본회의장과 동일 방식으로 배정
 - 의석 중앙에 제1교섭단체,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에 제2교섭단체, 좌측에 비교섭단체 배정
 - 의석비율에 따라 회의장 출석의원 수 배정
 - ※ 의석비율별 인원 배정(안) ('21. 3. 기준)
- 더불어민주당(174명, 58.0%) 29명, 국민의힘(102명, 34.0%) 17명, 비교섭단체(24명, 8.0%) 4명

【참고】 제2회의장 준비 및 의석배정(안) (회의장 50명 참석 시)



2 원격영상회의 방송중계 및 운영

I 방송중계

- 회의장은 기존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회의장 내 6대의 카메라를 운용하여 촬영하고, 회의장 촬영 영상이 영상회의시스템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 제1회의장 및 제2회의장 모두 각각 6대의 중계카메라 운용
- 회의장 현장 촬영 영상과 영상회의시스템 표출 영상을 함께 이용하여 중계 실시

I 의장석, 단상, 의사운영 보좌직원석 간 회의진행상황 확인 유기적 연계

- 회의상황 모니터링 PC 12대로 의원 영상 출석 및 의사진행관련 요청사항 등 확인
 - 출석확인 용도 10대(각 25명 의원 전담 관리) 및 종합 모니터링 용도 2대
- 특이사항 발생시(발언신청 등) 의사직원 및 단상 확인을 거쳐 의장님 보고
 - ※ 의장석 스크린과 단상 PC를 연계하여 신속히 해당 의원 화면 송출
- 발언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석 전면 디스플레이 일부를 발언의원 포커스 화면으로 전환

